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0

2024. 11. 27.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이성수 의원 등 11인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1. 27.)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개인정보 보호 사업 (안 제4조)
○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가. 정의(안 제2조)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용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함. 이는 국가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 입법 경제성, 법률 개폐 시 적시 적용 등을 위한 입법 기술임으로 타당하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국가법령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책무 규정은 구청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서술어가 “구청장이 (중략)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즉, 조 제목은 “책무”이지만 규정 내용은 사업 추진 근거이므로 책무 규정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구를 “구청장은---책무를 진다.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 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업

을 “(제1호)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 (제2호)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제3호)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구분 명시함.

○ 안 제4조제2호의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성동구, 양천구, 경기도 등)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성동구 사례를 참고 바람.

- 다만, 본 제정안이 시행되어 안 제4조제2호의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함에 있어 타 지자체의 운영 실태, 이용현황,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되지 않았을 경우의 분쟁 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4조제3호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배움터에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지원)에서는 주민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명시함.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그렇다면, 본 제정안을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정보주체 당사자(개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개인이 속한 기관이나 사업체를 기준으로 안 제5조제2항을 제2호와 제3호를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호로 통합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덧붙여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구의 재정 여건이나 기술 발전 상황,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지원 대상이나 기준, 지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안 제5조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 종합 의견

○ 본 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제도화하고 관련 사업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인정되며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30호

제안일자 : 2024.11.27.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국가법령 입법례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

○ 책무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구의 재정 여건이나 기술발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기준, 지원방법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주요내용

○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 책무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3조)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을 “조례에서 “개인정보”란”으로, “정보”를 “개인정보”로 한다.

안 제3조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지원)”을 “(개인정보 보호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
<신 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신 설>	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신 설>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